

# 펀드투자권유 전문인력 투자자보호

# Lesson

## 펀드 영업(투자권유) 실무

1. 표준투자 준칙 및 판매의 일반원칙
2. 펀드판매 6단계 절차
3. 펀드 권유 및 판매
4. 펀드매매방식의 변천
5. 펀드매매방식의 변천
6. 수익증권 매매 시의 입출금 처리

# 학습이정표

## • • 학습목표

- 일반투자자가 판매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6단계 판매절차를 구분할 수 있다.
- 펀드위험등급 분류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펀드판매방식 변천 및 수익증권저축거래의 종류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

- 표준투자 준칙 및 판매의 일반원칙
- 펀드판매 6단계 절차
- 펀드 권유 및 판매
- 펀드매매방식의 변천
- 펀드매매방식의 변천
- 수익증권 매매 시의 입출금 처리

# 펀드 영업(투자권유) 실무

1

## 표준투자 준칙 및 판매의 일반원칙

- 표준투자권유 준칙

- 금융투자협회가 제정 : 일반투자자가 판매회사 영업점 방문을 전제  
⇒ 온라인·전화 판매, 전문투자의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금융투사업자가 투자권유준칙 제정 및 운영에 참조

- 투자권유 및 판매의 일반원칙

판매회사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 등)은

- 관계 법령 준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업무 수행하고,
- 투자에 따른 위험, 거래의 특성,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의사를 결정하고,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됨을 알려야 하고
-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며 자신과 회사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

# 펀드 영업(투자권유) 실무

2

## 펀드판매 6단계 절차

- 일반투자가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투자하는 경우 거치는 절차
- 온라인·전화판매, 전문투자 대상 판매에는 달리 적용 가능



- 1단계 : 투자자 정보 파악
  -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구분
  - 투자자정보확인서 :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파악
  - 투자정보 파악 거부자 : 확인서 징구 후 요구 펀드 판매
- 2단계 : 투자자 유형 분류
  - 투자자성향 분류 및 의미 설명
 <투자자성향>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 3단계 :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 선정
  - 투자자성향 등급에 부합하는 펀드 선정 및 투자 권유
  - 투자가 투자자성향 보다 높은 위험수준의 펀드 요청
 ⇒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 징구 후 판매 or 거래중단
- 4단계 : 펀드에 대한 설명
- 5단계 : 투자자 의사 확인
  - 펀드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 투자권유 중지
  - 펀드매수를 원하는 경우 : 매수절차 진행
- 6단계 : 사후관리
  - 판매절차의 적정성 점검, 펀드잔고 통보, 자산운용보고서 발송 등

# 펀드 영업(투자권유) 실무

3

## 펀드 권유 및 판매

### (1)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 투자권유 불원(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서 징구 후 판매절차 진행
-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손익의 투자자 귀속 사실 등 고지
- (간이) 투자설명서 교부

### (2)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경우

#### ①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 투자자정보 확인서
  - 자필 작성 or 컴퓨터 출력 후 서명
  - 온라인 펀드 투자 : 적합성원칙 등을 구현할 시스템 구축
- 투자자성향 분석
  - 투자자성향 파악을 위한 배점 기준 : 판매회사 자율 제정
  - 투자자성향 분류 (예시)

제1방식	제2방식	제3방식	제4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고수익형</li> <li>• 중위험-중수익형</li> <li>• 저위험-저수익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생상품형</li> <li>• 주식선호형</li> <li>• 성장형</li> <li>• 이자-배당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선호형</li> <li>• 적극형</li> <li>• 성장형</li> <li>• 안정성장형</li> <li>• 위험회피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격투자형</li> <li>• 주식선호형</li> <li>• 주식펀드선호형</li> <li>• 고수익채권형</li> <li>• 혼합투자형</li> <li>• 안정투자선호형</li> <li>• 이자소득형</li> </ul>

#### • 투자정보의 유효기간

- 판매회사가 유효기간을 정하고 투자자가 동의하면 적용
- 유효기간 경과하면 다시 파악 ⇒ 부적합하면 투자권유 불가

# 펀드 영업(투자권유) 실무

3

## 펀드 권유 및 판매

### ② 투자권유

- 투자권유 절차

- 적합성 기준에 맞지 않으면 투자권유 불가  
판매사의 투자성향 분류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기준 참조해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정해야 함
- 이미 투자자정보를 아는 경우 : 기존 투자성향을 알리고 투자권유
- 위험회피목적·적립식 투자 :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
- 투자자가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려는 경우  
부적합 사실과 투자위험성 고지, 투자자 서명 확인 수령

- 투자권유 할 때 금지행위

-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이나 오인 소지가 있는 내용 제공
- 투자권유 요청 없이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 이용하는 행위  
(단, 증권·장내파생상품 투자권유 제외)
- 투자거부의사 표시 후에도 계속 투자권유 하는 행위  
(예외) 거부의사 표시한 다음 1개월 지난 후 권유  
다른 종류의 투자 상품 권유
- 금전대여, 중개, 주선 등을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그 밖에 투자권유 할 때 유의사항

- 투자자성향, 금융투자상품 성격을 고려해 장기투자 권유 가능
- 투자자산이 특정금융자산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분산투자 권유 가능
- 계열회사 등에 투자할 경우 해당 사실 고지
-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행위 금지
-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의 과당매매 및 부당한 권유 금지,

### ③ 설명의무

- 설명의무

- 투자권유를 할 때 다음 투자설명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다는 것을 서명 등으로 확인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성격,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해제 또는 해지 관한 사항
- 투자경험·지식·이해수준에 따른 차등 설명 가능
- 투자가 손익구조·손실위험을 이해 못하면 계속해 투자권유 불가
-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투자자가 서명·기명날인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사전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경우

# 펀드 영업(투자권유) 실무

3

## 펀드 권리 및 판매

-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 환율변동위험, 환 위험 헤지 여부, 환 헤지 비율, 환 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 헤지 수단 및 방법
  - 환 헤지가 모든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지 못하고, 투자가 직접 환 헤지를 할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 시 손실 발생
  - 모자형펀드 : 환헤지 비율(예 : 20%, 40%, 60%)을 달리해 판매 가능

### (3) 펀드의 위험등급 분류

- 펀드위험등급 기준 변경 (2016년 7월 1일 이후)
  - (변경 전) 투자 예정자산과 운용전략을 기준으로 사전 분류
  - (변경 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 분류  
레버리지 펀드 등 초고위험 펀드에 별도의 위험등급 부여
- 펀드위험등급 분류 기준
  - 해당펀드의 최근 3년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 분류

2016년 6월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사가 펀드 등록시점에서 투자 예정자산 및 비중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펀드를 청산할 때까지 불변 (예시)</li> </ul> <p>① 고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2등급</p> <p>② 국공채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MMF → 5등급</p>
2016년 7월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사가 개별 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매 결산시점마다 등급을 (재) 분류 (예시)</li> </ul> <p>① 펀드의 최근 3년간 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15%~25% 사이인 경우 → 2등급</p> <p>② 국공채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MMF → 5등급</p>

# 펀드 영업(투자권유) 실무

3

## 펀드 권유 및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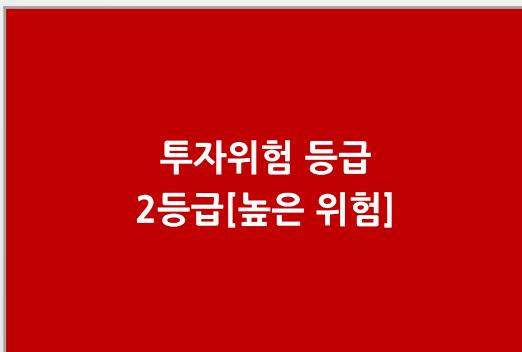
- 펀드위험등급을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  
위험이 매우 높거나 수익구조가 복잡하여 투자자보호가 필요한 펀드 등을 일반 주식형펀드와 구분하여 더 높은 위험 등급 부여  
→ 레버리지 펀드·최대손실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ELF 등
-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위험 등급 구간

등급	1 (매우높은위험)	2 (높은 위험)	3 (다소높은위험)	4 (보통 위험)	5 (낮은 위험)	6 (매우낮은■)
수익률 변동성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 • 적용대상

- 실제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가능한 모든 펀드에 대해 적용  
→ 주식·채권 등 증권형펀드, ETF, MMF 등으로 전체 공모펀드 80% 이상
- 다만,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불가능 펀드는 투자대상 자산 등에 따라 분류  
→ 부동산펀드처럼 시가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수익률이 위험을 대변하지 못하거나, 레버리지펀드처럼 투자자보호를 위해 등급부여가 필요한 경우
- 등급표기 방식
  - 전체 등급 중 해당 등급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위험등급 표기

&lt; 2016년 6월 이전&gt;



&lt; 2016년 7월 이후&gt;

투자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 변경된 등급은 해당 펀드 결산 후 처음 수정하는 투자설명서에 반영  
→ 기존 투자자에게는 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사실 고지

# 펀드 영업(투자권유) 실무

4

## 펀드매매방식의 변천

### (1) 수익증권현물거래

-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분할한 수익증권을 위탁회사가 고객에게 매각하고, 매각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전형적인 채권계약
- 거래단위 : 최소발행좌수 (통상 1,000좌)
- 수익증권 분실 및 도난 위험 상존하고, 거래가 불편

### (2) 수익증권예탁통장거래

- 분실·도난 방지를 위해 고객이 매수한 수익증권을 위탁회사에 보관
- 위탁회사는 예탁을 증명하는 통장 교부하고, 고객은 이 통장으로 수익 증권 추가매수 및 환매
- 거래단위 : 1좌 단위 거래 가능
- 일부환매 시 수익증권을 분할해야 하고, 좌수 개념의 이해가 어려움

### (3) 수익증권저축

- 판매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저축금액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보관·관리하고 저축자에게 저축통장을 교부해 주는 제도
- 수익증권예탁이 고객이 수익증권을 매수한 다음 그 수익증권을 다시 판매회사에 보관하는 제도라면, 수익증권저축은 수익증권의 매수 및 보관·관리를 처음부터 판매회사에 위임하는 제도
- 수익증권을 은행의 예금거래와 같이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함.  
좌수 위주 보관 개념을 금액 위주 저축개념으로 전환하여,  
임의식·거치식·적립식 등 다양한 저축 설계 가능.
- 자본시장법시행 이후 '수익증권저축거래'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 잡음

# 펀드 영업(투자권유) 실무

5

## 수익증권저축의 종류

### (1) 임의식

- 저축금액 인출요건, 기간, 저축금액 및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지 않고 저축
- 동일계좌에 추가납입, 일부인출 가능
- 수익금 범위 내에서는 인출 불가
- 저축재산 인출시 환매수수료 징구

### (2) 목적식

- 저축금 인출요건, 기간, 저축금액 및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저축

#### ① 거치식

- 수익금 인출식
  - 일정금액·일정기간 저축 시 수익금 범위 내에서 인출 가능
  - 원본금액 감액 시 일부 해약으로 간주
  - 추가납입 : 동일계좌에서는 불가, 별도 계좌 추가 개설
- 일정금액 인출식
  - 일정금액·일정기간 저축 시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 매월 인출 가능
  - 다른 내용은 수익금 인출식과 동일

#### ② 적립식

- 정액적립식
  - 일정기간 이상 저축기간을 정하고, 매월 일정금액(좌수)를 저축
  - 저축기간 중 일부인출 가능 (환매수수료 징구)
  - 저축금 완납·저축기간 종료 후 일부 인출 시 환매수수료 미징구
  - 6개월 이상 저축금 미납 시 해지 가능 (사전고지)
  - 만기일 도래 후 미납금이 있는 경우 완납 후 다음날 지급
- 자유적립식
  - 일정기간 이상 저축기간을 정하고, 금액제한 없이 저축
  - 저축기간 중 일부인출 가능 (환매수수료 징구)
  - 저축기간 종료 후 일부 인출 시 환매수수료 미징구
- 목표식
  - 저축목표금액을 정해 일정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저축금액 및 납입횟수에 제한 없음)
  - 만기 : 저축금액이 목표금액에 도달하고 저축기간이 종료된 때  
(만기일에 도달했으나 목표금액 미달 시 저축기간 연장)
  - 목표금액 도달 시 추가입금 불가
  - 저축기간 중 일부인출 가능(환매수수료 징구)
  - 저축목표금액 완납·저축기간 종료 후 일부 인출 시 환매수수료 미징구

# 펀드 영업(투자권유) 실무

6

## 수익증권 매매 시의 입출금 처리

### (1) 입금 거래

- 입금거래 유형 : 금액입금(현금, 수표, 어음), 단체입금, 현물입금
- 입금산식
- 좌수환산 : 수납 시 좌 미만 절상, 지급 시 좌 미만 절사

$$\text{매수좌수} = \text{저축금액} \div (\text{매수 시 기준가격}/1,000) \rightarrow \text{좌 미만 절상}$$

$$\text{환매좌수} = \text{저축금액} \div (\text{환매 시 기준가격}/1,000) \rightarrow \text{좌 미만 절상}$$



### 예시

$$1,000,000\text{원} \div (1,138.25/1,000) = 878,541.62\text{좌} = 878,541\text{좌}$$

- 금액환산 : 수납 시 원미만 절사, 지급(평가) 시 원 미만 절상

$$\text{저축금액} = \text{매수좌수} \times \text{매수 시 기준가격}/1,000 \rightarrow \text{원 미만 절사}$$

$$\text{지급금액} = \text{환매좌수} \times \text{환매 시 기준가격}/1,000 \rightarrow \text{원 미만 절상}$$



### 예시

$$878,541\text{좌} \times 1,138.25/1,000 = 999,999.29\text{원} = 1,000,000\text{원}$$

# 펀드 영업(투자권유) 실무

6

## 수익증권 매매 시의 입출금 처리

### (2) 출금 거래

- 출금거래 유형
  - 금액출금 : 가장 일반적 형태, 전액출금과 일부출금으로 구분
  - 좌수출금 : 일정 좌수를 기준으로 출금하는 경우
  - 이익금출금 : 거치식저축 수익금을 환매수수료 없이 출금하는 경우
  - 이익분배금·상환금출금 : 결산 후 이익분배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출금
  - 현물출금 : 현물환매, 현물 지급
- 출금산식

$$\text{출금금액} = \text{환매 시 평가금액} - \text{환매수수료} - \text{세액}$$

- 환매 시 평가금액 = 환매좌수×환매 시 기준가격/1000 → 원 미만 절상
- 환매수수료 = {환매좌수×(환매 시 기준가격-매수 시 기준가격)/1000}  
× 환매수수료율 → 원 미만 절사
- 세액 = 과세소득 × 적용세율 → 10원 미만 절사  
과세소득 = 환매좌수×(환매 시 과표기준가격-매수 시 과표기준가격)/1000
- 환매수수료

# 펀드 영업(투자권유) 실무

6

## 수익증권 매매 시의 입출금 처리

### (3) 입출금예시

- 개인이 A펀드의 수익증권을 아래와 같이 거래
  - 환매수수료율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거래 일자	기준가격	과표 기준가격	거래 구분	입출금 금액	잔고좌수	환매 수수료	세액
1.10	1,050.00	1046.00	입금	100,000,000	95,238,096	-	-
3.20	1,070.00	1064.00	전액출금	100,512,770	0	1,333,333	58,660

- 1월 10일 입금 시  
매수좌수 =  $100,000,000 \text{원} \div (1,050.00/1000) = 95,238,096 \text{좌}$
- 3월 20일 전액 출금 시
  - 1 환매 시 평가금액 =  $95,238.096 \text{좌} \times 1070.00/1,000 = 101,904.763 \text{원}$
  - 2 환매 수수료 =  $\{95,238.096 \text{좌} \times (1070.00-1050.00)/1,000\} \times 70\% = 1,333,333 \text{원}$
  - 3 과표 =  $95,238.096 \text{좌} \times (1064.00-1046.00)/1,000 - 1,333,333 \text{원} = 380,952 \text{원}$
  - 4 세액 =  $53,330 \text{원} + 5,330 \text{원} = 58,660 \text{원}$ 
    - 소득세 =  $380,952 \text{원} \times 14\% = 53,330 \text{원}$
    - 지방소득세 =  $53,333 \text{원} \times 10\% = 5,330 \text{원}$
  - 5 출금금액 = 환매 시 평가금액 - 환매수수료 - 세액
 
$$\begin{aligned}
 &= 101,904,763 \text{원} - 1,333,333 \text{원} - 58,660 \text{원} \\
 &= 100,512,770 \text{원}
 \end{aligned}$$



## 정리하기

- 일반투자자가 판매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①투자자정보파악, ② 투자자 유형분류, ③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선정, ④ 펀드에 대한 설명, ⑤ 투자자의사 확인, ⑥ 사후관리 순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 운용사가 개별 펀드의 최근 3년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매 결산시점마다 펀드의 위험등급을 총 6계 단계로 (재)분류한다. 이와 같은 펀드등급 분류 방식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이 측정 가능한 모든 펀드에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펀드처럼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레버리지 펀드처럼 투자자보호를 위해 별도의 등급부여가 필요한 경우는 투자대상자 산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매매방식은 수익증권현물거래, 수익증권예탁통장거래, 수익증권저축제도 순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는 대부분이 수익증권저축거래를 하고 있다.
- 수익증권저축의 종류에는 임의식과 목적식이 있으며, 목적식은 다시 거치식(수익금 인출식, 일정금액 인출식), 적립식(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목표식으로 세분된다.

